

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全文

〈中〉

③ 위원은 행정조정실·내무부·국방부·문교부·상공부·건설부·교통부·체신부·총무처·과학기술처·농촌진흥청·수산청·공업진흥청·노동청 및 전파관리국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이내로 구성한다.

제2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25조 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에 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술분야의 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한다.

제26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② 간사 및 서기는 과학기술처의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.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는

보조한다.

제27조 (수당등)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 및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 (기술자격취득자 등록신청등) ① 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등록부를 비치하고,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본적·주소·생년월일·성명 및 성별
2. 기술분야·기술자격의 종류 및 등급
3. 겸정의 합격년월일 및 합격통지서의 번호
4.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

③ 주무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법 제 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등록사항을 학과기술처장관 및 노동청장(기능계에 속하는 등록사항에 한한다)에게 통문하여야 한다.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사항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를 인력수급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, 노동청장은 이를 직업안정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29조 (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신청) ① 법 제 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주무부

——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——

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 1 항의 신청이 휘손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휘손한 기술자격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0조 (기술자격수첩의 관리등)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그 기술자격수첩에 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취업·승진·전직 또는 퇴직할 때
 2.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때
 3.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인가 받은 때
 4.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때
 5. 기술자격수첩의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
- ② 제 1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자체없이 기술자격수첩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이 정지된자의 기술자격수첩에는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31조 (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대한 우대)

①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그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공무원이나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. ②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자격취득자인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공무원이나 종업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수·승진·전보·신분보장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. ③주무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기술자격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32조 (기타이익) 법 제10조제 2 항에서 “기타이익”이라 함은 기술연수를 위한 해외파견·금융상의 지원·장려금의 지급등을 말한다.

제33조 (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등의 범위) ①법

제1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 및 이와 동종 동등한 그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은 별표 7와 같다. ②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동종·동등한 기술자격 취득자라도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동종·동등한 자격의 취득자로 보지 아니한다.

제34조 (기술자격의 정지기간) 법 제1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2년이내로 한다.

제35조 (심신장애자) 법 제13조제 5 호에서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”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된 자를 말한다.

제36조 (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)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등급·기준 및 명칭에 관하여는 별표 7을 준용한다.

제37조 (수수료등)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술사·기사 1급·기사 2급 및 기능장의 겸정수수료 1,000원.
2. 기능사 1급·기사 2급 및 기능사보의 겸정수수료 500원.
3. 기술사의 등록수수료 3,000원.
4. 기사 1급·기사 2급·기능장 및 기능사 1급의 등록수수료 1,000원.
5. 기능사 2급 및 기능사보의 등록수수료 500원.
6. 기술자격수첩의 재교부 수수료 500원.

②제 1 항 각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무부장관이 체신부장관·전파관리국장 또는 철도청장인 경우에는 제 1 항 각호의 수수료(체신부장관 및 전파관리국장이 제38조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에게 겸정의 권한을 위탁한 경우의 그 겸정수수료를 제외한다)는 현금으로 제38조제 3 항내지 제5 항 및 제8 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·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

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

교육감·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·도교육위원회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이하는 검정의 검정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, 제38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하여 전자공업진흥법 시행령 제 5 조제1항제 2호의 한국정밀기기센타가 하는 검정의 검정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③주무부장관은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수수료외에 실기시험 (제 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시험에 갈음하여 행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38조 (권한의 위임등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현역군인에 대한 검정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. 다만,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한한다.
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검정의 필기시험문제 및 실기시험문제의 작성·출제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위탁한다.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원동기 취급기능사 1급·원동기 취급기 능사 1급·원동기시공기능사 2급·화약류관리기사 1급·화약류관리기사 2급·위험물취급기능사 2급·소방설비기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기능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, 법 제 9 조제 1 항·제 2 항·법 제12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을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.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광산보안기능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, 정밀 기계기사 1급·정밀기계기사 2급·전자기사 1급·전자기사 1급·공업계기기사 2급·공업계기사 1급·정밀가공기능사 1급·정밀가공기능사 2급·정밀가공기능사보·정밀측정기능사 1급·정밀측정기능사 2급 및 정밀가공기능사보·정밀측정기능사보의 검정의 권한을 전자공업진흥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 한국정밀기기센타에 위탁한다. 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토목기술사(시공)·건축기

술사(시공) 및 기계기술사(건설기계)의 검정의 권한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위탁한다. ⑦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기능장의 검정의 권한을 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. ⑧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유선설비기능사 1급·유선설비기능사 2급·유선설비기능사보·인쇄통신기능사 2급 및 음향통신기능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노동청장에게 위탁하고, 전파관리국장은 전파통신기능사 2급 및 무선통신기능사 2급의 검정의 권한을 노동청장에게 위탁한다.

제39조 (시행세칙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

①법 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에 관하여는 별표 7을 준용한다. 다만,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주임기술자 2급·전기주임기술자 3급·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갑류·전기기술자율류·전기통신법에 의한 1급유선기술사·2급유선기술사 및 3급유선기술사·측량법에 의한 2급측량사 직업훈련법에 의한 1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 및 2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학력이나 실무경력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이 영에 의한 전기기사 1급·전기기사 2급·전기공사기사 1급·유선설비기사 2급·유선설비기사 1급·유선설비기능사 2급·측지기사 1급·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보며, 그 학력이나 실무경력 하 총리령으로 정한다.